

문서번호	행정지원과-13 287
결재일자	2016.5.1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인사팀장	행정지원과장	행정관리국장
원영래	이재봉	임재홍	05/12 고한석
협 조			
	★주무관	정호연	

**2016 상반기 휴직공무원
복무실태 점검계획**

2016.5.11.

강 북 구

2016 상반기 휴직 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

우리구 휴직 공무원이 휴직 목적 외 사용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1 추진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(휴직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의17(휴직자 복무관리 등)
-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(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, '13.6.13)
-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계획(인사과-18259호, '13.7.22)

2 점검 방향

-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복무실태 중점 점검
 - 휴직중 휴직사유와 달리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
 -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
- 휴직자 개인별 복무상황 신고서 징구와 함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병행
- 휴직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와 함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 조치
- 자체방침에 따라 점검 후 점검결과 서울시 통보(상·하반기 의무적 제출)

3 점검 개요

○ 점검 일 : '16. 5. 16(월) ~ 5. 20(금), 5일

○ 점검대상 : 총85명

- '13.5.6(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) 이후 휴직 또는 휴직연장 공무원으로
- 법 제63조제1항1호(질병) 및 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(해외유학, 연수, 육아, 간병, 배우자동반) 의해 '16.5.1 기준 휴직중인 공무원

구 분	계	육아	요양	가사·간병	배우자동반	출산휴가	유학
계	85	72	1	3	2	7	
행정관리국 (감사, 홍보 포함)	14	10		1	1	2	
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	28	25		1		2	
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	9	8				1	
보건소 번1.2.3동	15	13		1		1	
삼양, 미아, 송중, 송천, 삼각산동	6	6					
수유1.2.3동 우이, 인수동	13	10	1		1	1	

○ 점검 자 : 6명(국·동별 담당자)

행정관리국 (감사, 홍보 포함)	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	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	보건소 번1.2.3동	삼양, 미아, 송중, 송천, 삼각산동	수유1.2.3동 우이, 인수동
원영래	정호연	이영은	이재훈	유연숙	김수정

○ 점검방법

-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 신고를 기초로 점검하되,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 가는 자는 현장점검 병행

○ 점검사항 :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

- 비상연락망 점검(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)
- 휴직 전 사전교육(소속부서장 시행) 실시 여부

－ 휴직자 개인별 복무상황 보고서 직접 작성·징구

※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에 따라 모든 종류의 휴직은 5월 보고대상임

－ 휴직별 중점 점검 사항 및 추가 증빙서류

- ▶ 질병휴직 : 진단서, 출입국 사실증명 등
- ▶ 해외유학휴직 : 출입국 사실증명, 휴직사유 종료(학기 미등록)여부 등
- ▶ 육아휴직, 가사휴직 : 육아나 간병과 상관없는 해외 체류 여부, 영리업무금지 의무위반(개인사업종사) 등
- ▶ 배우자동반휴직 : 출입국 사실증명 등

－ 증빙서류 추가 확인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

예시 : 가사휴직자 소득증명원 징구 후 소득있음이 확인되는 경우

4 향후 계획

- 점검결과 서울시 통보 - '16. 5. 27한
- '16년도 하반기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 실시 - '16. 11월중

- 붙임 1. 휴직자 근무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양식 1부
2.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양식 1부. 끝.

휴직자 근무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

□ 점검직렬 :

□ 자체점검 개요

가. 점검기간 : 2016. . . ~ . ()

나. 점검인원 : 5급 000외 __명

다. 점검대상 : 총 명

구분	계	요양	육아	가사간병	유학	배우자동반	연수
계							
행정직군							
기술직군							
연구·지도직							
관리운영직							
일반임기제							
전문경력관							

라. 점검내용 :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,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, 휴직의 충실성 여부(학점이수상황 등) 등 휴직 전반

□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(해당시 작성, 작성예시)

소속	적발인원	휴직종류	적발시점	적발사례	조치결과	비고
	0명	육아휴직	휴직종료 후	• 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	•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, 육아휴직 수당 환수 •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(정직 1월) • 근평 및 성과급 최하위 부여	
	0명	유학휴직	휴직종료 후	• 휴직사유 종료(학기 미등록) 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외에서 체류 중	•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, 육아휴직 수당 환수 •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(견책) • 성과급 최하위 부여	
	0명	육아휴직	휴직중	• 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(개인사업종사)	• 복직을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, 육아휴직 수당 환수 •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(견책)	
	0명	가사휴직	휴직종료 후	• 모친 가사휴직 중 0개월 가량 해외 체류	• 복직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, 육아휴직 수당 환수 •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경고 조치	

*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(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 기관별 조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)에 대해 작성

□ 기타 건의사항 등

* 행자부에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

